

선 람	기 관 의 장



제27호(호외) 2021. 7. 9.(금)

조 례

광양시 조례 1819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광양시 조례 1820호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8
광양시 조례 1821호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10
광양시 조례 1822호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13
광양시 조례 1823호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
광양시 조례 1824호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7
광양시 조례 1825호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	40
광양시 조례 1826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42
광양시 조례 1827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광양시 조례 1828호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규 정

광양시 규정 416호 광양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9
--	----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1-265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74
광양시 고시 제2021-267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75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1-1348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공고	82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1944, 행정1945)

광양시 조례 제1819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8장(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2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광양시장은 제32조에 따른 광양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0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광양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1. ~ 7. (현행과 같음) 8. <u>“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u> <u>제8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u> 제2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u>광양시장은 제32조에 따른 광양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u>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u> ③ <u>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u>

<신 설>

할 수 있다.

④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 설>

<신 설>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0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신 설>

<신 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광양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광양시 조례 제1820호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조례 제1821호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광양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 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시민의 책무) 광양시 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집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관련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조례 제1822호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시설, 소득시설, 체험시설 및 경관개선 시설 등을 말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면·동장에게 시설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절차)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료를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의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관리위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비 또는 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료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 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2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이용료를 반환한다.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90% 반환

다.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2.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면제)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협의회

제15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동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협의회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촌개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1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협의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실비변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준용)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조례 제1823호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농촌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활력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이하 “신활력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6.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7. 그 밖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활력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활력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추진단 및 신활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위해 추진단 및 신활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진단에 조례 제10조, 제12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위탁의 기간 및 갱신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단이 신활력센터에서 발생한 수익을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단은 수익잉여금을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인력확충 등의 사업비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과 기능) ① 추진단은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등록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 발굴과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⑤ 코디네이터 등은 비상근으로 운영하며,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활동조직 및 주민 역량강화
4. 그 밖에 시가 위탁한 사업 등

⑦ 제6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시와 사업 시행의 공동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활력센터 기능) 신활력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활력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2. 신활력사업 관련 가공, 제조, 체험,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등
3.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전시·홍보·판매
4. 기타 사업추진 및 참여자, 방문객 등을 위한 문화공간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신활력사업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예산 심의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신활력사업의 업무담당 부서장

나.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⑥ 위원장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건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및 신활력센터의 운영과 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 지원
2.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
3.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의 기반구축 및 산업고도화 사업
4.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5.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을 활용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시 지원으로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조례 제1824호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 또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엄마를 위해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어느 한 사람)를 말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출산장려 시책사업”이란 시가 아이디어 공모나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내용 중 타당하다고 인정한 시책과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출산장려금 등”이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후조리비용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하되 배우자의 사망, 이혼, 미혼모인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 ④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20%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첫 번째 생일 때 지원하는 금액은 출생일 이후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시: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2. 첫 번째 생일 :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제5조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산장려금 : 출생일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2. 산후조리비용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 출생일과 첫 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2. 출생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3.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4. 신청인의 적격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시장 및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현황, 별지 제3호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서 접수현황 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의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접수현황 대장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 및 지원 현황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관리대장은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파일로 관리할 경우에는 문서보안과 자료 삭제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신 및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
2. 모자보건,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4. 제2조제5호에 의해 채택된 출산장려 시책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임신·출산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검진을 위해 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신생아와 산모는 제5조 별표1과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호 ”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를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② 제3조제1호 ”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를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별표 1)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출생 순위별	지급액	지 급 방 법
첫째아	500만원	• 출생 시 100만원 • 매년 생일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아	1,000만원	• 출생 시 200만원 • 매년 생일 20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1,500만원	• 출생 시 300만원 • 매년 생일 3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	• 출생 시 400만원 • 매년 생일 400만원씩 4년간 지급

※ 쌍태아 이상의 경우 태아별로 지원

(별표 2)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이용여부	소득기준	1일 지원액	지급액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10만원	최대 1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모	9만원	최대 126만원
	그 외의 경우	8만원	최대 80만원
미 이용자	20만원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접수일 : 20 . .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 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 와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광양시 자체 급부			☐ 출산장려금 (출생, 돌)		출생일 기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 이상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 직업상 사유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산후조리비용 (관내 조리원이용, 미이용)		출산일 기준 광양시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 다자녀(둘째아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출생, 돌)		출생일 기준 광양시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 직업상 사유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 다둥이(셋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일반	서비스명	아기 이름	신청 내용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아동수당		☐ 아동수당				2. 복수국적 여부 : ☐ 예 ☐ 아니오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본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지원대상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국민행복 카드신청	[] BC카드 (은행) ※ IBK기업, 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우6리, 전북, 신한, 제주, 우체국, 부산, 수협, 하나은행 신청 가능			[] KB국민 카드	[] 롯데 카드	[] 삼성 카드	[] 신한 카드		
			※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를 선택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셋째아 이상 지원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고객번호 미 기재시 신청 불가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급부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공무원 처리할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양육수당 등 담당자 공람·확인			수신 여부 확인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관내 전입일) ()째		날짜: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날짜: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날짜: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건소 성명: ☐ 한국전력공사 성명: ☐ 서울도시가스 성명: ☐ 지역난방공사 성명:		
처리자	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 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년	월	일	~	년	월	일

[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통장사본 4. 기타 소명자료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3. 산후조리비용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후조리비용납부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직업)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 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통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광양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센터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등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광양시 자체 급부 관련 광양시장이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등 각종 지자체 서비스 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이용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제공하는 항목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조회, 주소, 카드수령지, 배우자 성명, 전화번호, 자녀 수, 자녀성명, 생년월일, 카드번호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 하			
출산장려금 등은 매년 생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없음에 주의바랍니다.)		확인자 _____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장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읍·면·동, 사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
		선정통지 및 급부 제공 읍·면·동, 사군구, 한전 등/ 보육료·출산장려금·의료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현황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현황 대장

[illegible]

(별지 제4호 서식)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접수현황 대장

연번	신청일	신 청 인					신 생 아			전입일	서명	카드수량(매)			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신생아와 관계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수령	지급	잔량	

광양시 조례 제1825호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의 물질을 말한다.
2. “급식시설”이란 광양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의 급식시설
 -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급식시설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급식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검사계획 수립)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급식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광양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급식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급식시설 및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 및 급식시설에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학교급식 관계자, 어린이집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조례 제1826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2022년 이후는 2022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2항)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³ /월)	단 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이후
가정용	1~20	370	450	530	610	690
	21~30	490	570	650	730	810
	31이상	610	690	770	850	930
일반용	1~100	600	700	800	900	1,000
	101~300	750	850	950	1,050	1,150
	301~500	900	1,000	1,100	1,200	1,300
	501이상	1,050	1,150	1,250	1,350	1,450
전용공업용	1~150	490	580	670	760	850
	151이상	640	730	820	910	1,00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복지시설(생활시설)】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 되어 있는 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전 용 공업용	공업용수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곳

광양시 조례 제1827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매립장”을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시설”로 한다.

제2조 중 “한다)”를 “한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별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임무)”를 “(업무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별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2.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판매
3. 재활용 폐기물 선별 잔재물 처리
4. 선별시설 내 각종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유지
5. 그 밖에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별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점검하여 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선별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3. 최근 5년 이내 일일 선별능력 8톤 이상의 선별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자

②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④ 위탁기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선별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선별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선별시설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별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시설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관계규정 및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별시설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선별시설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선별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종전의 제14조) 중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폐기물 관리 조례”를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시설----- -----.
제2조(위치)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광양읍 직동2길 113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 ----- ---- 한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 ----.
제2조의2(적용범위) (생 략) <신 설>	제2조의2(적용범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선별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조(업무 및 운영)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선별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신 설>

<신 설>

2.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판매

3. 재활용 폐기물 선별 잔재물
처리

4. 선별시설 내 각종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유지

5. 그 밖에 선별시설 관리·운
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별시
설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점
검하여 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선별
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선별시설 위탁운영) ① 시
장은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
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
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
문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신 설>

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을 받은 자

3. 최근 5년 이내 일일 선별능력
8톤 이상의 선별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자

②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
년이내로 한다.

④ 위탁기간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선별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선별시설의 안정
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
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6조(선별시설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별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시설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관계규정 및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별시설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선별시설 위탁의 해지)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u>제14조(준용)</u> 수수료 부과징수와 폐기물반입 및 처리 등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u>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u>」, 「<u>광양시 재무회계 규칙</u>」, <u>폐기물 관리 조례</u>를 각각 준용한다. <u>제15조</u> · <u>제16조</u> (생략)	2. <u>수탁자가 선별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u> 3. <u>공익상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제18조(준용)</u> ----- ----- ----- ----- 「<u>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u>」, 「<u>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u>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u>」---. <u>제19조</u> · <u>제20조</u> (현행 <u>제15조</u> 및 <u>제16조</u>와 같음)
--	--

광양시 조례 제1828호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에”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2조 중 “관할의 도시림, 생활림”을 “관할 도시숲, 생활숲”으로 하고 “(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를 “(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0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3조”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제1항 중 “9명 이내의”를 “6명 이상 15명 이하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 제6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을 “도시숲 등의 조성”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제1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 등”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0”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별표 1”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가로수를”을 각각 “가로수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지치기 등”을 “가지치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7조의 제목 “원인자 부담금”을 “비용부담 등”으로 하며 제1항 중 “제1항”

을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이하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4장의 제목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를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 대상 수목은”을 “시장은 수목이”로, “수목으로 한다”를 “경우에는 바뀌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19조제1항 단서 중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을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1”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정하는 따라”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위치					
	수종		규격	수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식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서						
신청인	성명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위치					
	수종		규격	수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식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인조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 시(이하 “시”라 한다) <u>관할의 도 시림, 생활림, 가로수(이하 “도 시림 등”이라 한다)</u>에 대한 조 성 ·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3조(<u>도시림 등의 조성 · 관리계 획</u>)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의 <u>도시림</u> 등의 실태 를 면밀히 조사 · 분석한 후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u>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 ----- ----- ----- -----. 제2조(적용범위) ----- ----- <u>관할 도시 숲, 생활숲, -----(이하 “도 시숲 등”이라 한다)</u> ----- ----- -----. 제3조(<u>도시숲 등의 조성 · 관리계 획</u>) ①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6조제1항 --- 따라 관할의 <u>도시숲</u> 등 ----- ----- -----

림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성·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등의 기능증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6.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이하 “도시숲 등의---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도시숲---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의 구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구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구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구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구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

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관리계획-----

③ ----- 도시숲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법 제13조----- 도시숲
등의 구성·관리 등-----
--- 도시숲 등의 구성·관리심의위원회-----
-----.

1. 법 제6조----- 도시숲 ---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 도시숲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
----- 6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립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3. (생략)

③ (생략)

제8조(회의) ① ~ ⑤ (생략)

⑥ 간사는 도시립 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생략)

제2장 도시립 등의 조성

제9조(조성 대상지) ① 시장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

상 15명 이하의-----

-----.

② ----- 도시숲 -----

-----.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도시숲 -----

-----.

⑦ (현행과 같음)

제2장 도시숲 등의 조성

제9조(조성 대상지) ① -----

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림 등을 조성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별 관리)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6호가목에 따른 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제한한다.

----- 도시숲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도시숲 -----

--.

제11조(기능별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 등-----

-----.

제13조(식재 위치)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별표 1-----

1. ~ 3. (생 략)

제15조(조성협약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승인신청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생 략)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신 설>

②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성협약 등) ① 법 제12조제3항-----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승인신청 등) ① -----

-----.

1. 가로수의 -----

2. 가로수의 -----

3. (현행과 같음)

4. -----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및 도시
계획 등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
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7조(원인자 부담금) ① 제1항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시장
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
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시
장과 협의를 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신 설〉

③ -----

-----.
----- 도시
계획 -----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비용부담 등) ① 제16조제
1항-----

-----부담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
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
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
위자(이하“훼손자”)에게 원상회
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③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제18조(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 대상수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으로 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9조(가지치기) ① 가지치기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

큰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④-----

제4장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

제18조(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시장은 수목이 -----

----- 경우에는 바뀌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가지치기) ① -----

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③ (생 략)

제20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시림 등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24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주민들의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도시림 등의 관리

2. ~ 5. (생 략)

② (생 략)

③ 모든 주민은 시에서 시행하

-----.

-----시행규

칙 제6조제4항 별표 1-----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병해충의 방제) -----

----- 도시숲

-----.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주민참여 등) ① -----

----- 도시숲 -----

-----.

1. ----- 도시숲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는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시
책에 협력해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
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자료관리) ① (생 략)

② 가로수관리대장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따라 전산화된 대
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 도시숲 -----
-----.

④ ----- 도시숲 -----

-----.

제25조(자료관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정하는 기준에 따라-----
-----.

광양시 규정 제416호

광양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① 광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해당 특산품 관련 요식업소를 1년 이상 운영한 사람은 인증식당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품목별 특산품 관련 인증식당으로 지정받은 요식업소 운영자는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지된다”를 “취소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취소된”을 “정지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규정의 관련 조항 변경”을 “규정에 부수하는 별표의 내용변경”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증식당 지정 신청)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인증식당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1. <u>광양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해당 특산품 관련 요식업소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품목 인증식당 운영자의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u> 2. <u>광양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해당 특산품 관련 요식업소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u>	제4조(인증식당 지정 신청) ① <u>광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해당 특산품 관련 요식업소를 1년 이상 운영한 사람은 인증식당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식당 지정 신청서와 인증식당 운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①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u>	제6조(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① <u>품목별 특산품 관련 인증식당으로 지정받은 요식업소 운영자는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u>

1. <u>품목별 특산품 관련 인증식당으로 지정받은 요식업소 운영자</u> 2. <u>별표 1의 품목별 인증식당 품질관리기준을 준수 하는 자</u> 3. <u>별표 4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체 지도·점검사항을 충족하는 자</u> 4. <u>광양시의 정규점검 및 수시점검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u>	
5. <u>광양시가 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체납이 없는 자</u>	
6. <u>각종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u>	
7. <u>광양시가 권장하는 가격기준을 준수하는 자</u>	
8. <u>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자</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승계) ① (생략)	제7조(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식당 운영권 및 증명표장 사용권 승계를 원하는 자는 인증식당 운영권 및 증명표장 사용권 승계 신청서(<u>별지 제3호 서식</u>)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식당 운영권 및 증명표장 사용권 승계를 원하는 자는 인증식당 운영권 및 증명표장 사용권 승계 신청서(<u>별지 제2호 서식</u>)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인증식당 지정 취소) ① 시	제8조(인증식당 지정 취소) ① --

장은 인증식당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식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 인증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u>	<u><삭 제></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인증식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증명표장 사용도 함께 <u>정지</u> 된다.	④ ----- ----- <u>취소된다</u> .
제9조(증명표장 사용 정지) ① 장은 증명표장의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표장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증명표장 사용 정지) ① -- ----- ----- -----.
1.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u>취소된</u> 경우	1.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u>정지된</u> 경우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u>	<u><삭 제></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품목 추가) 광양시 특산품 관련 요식업 중 증명표장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이 <u>규정의 관련 조항 변경</u> 등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품목 추가) ----- ----- ----- <u>규정에</u> <u>부수</u> <u>하는 별표의 내용변경</u> -----.

광양시 고시 제 2021-265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변경 내역〉

연번	도 로 명 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1	옥룡면 석곡길 18-10	옥룡면 석곡1길 6-6	2021. 7. 7.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2	광양읍 동주길 1-32	광양읍 동주2길 22-20		
3	광양읍 동주길 1-39	광양읍 동주2길 30-16		
4	광양읍 동주길 1-51	광양읍 동주2길 91		
5	광양읍 동주길 1-73	광양읍 동주2길 103-15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7.

광 양 시 장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89	2021. 7. 14.	건물철거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91		
3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93		
4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201		
5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263		
6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366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14.

광 양 시 장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망덕길	189	진월면 망덕리 46-1	▶ 건물철거 (건축과-26270(2021. 7. 1.)호에 의거)	2021. 7. 1.	2021. 7. 14.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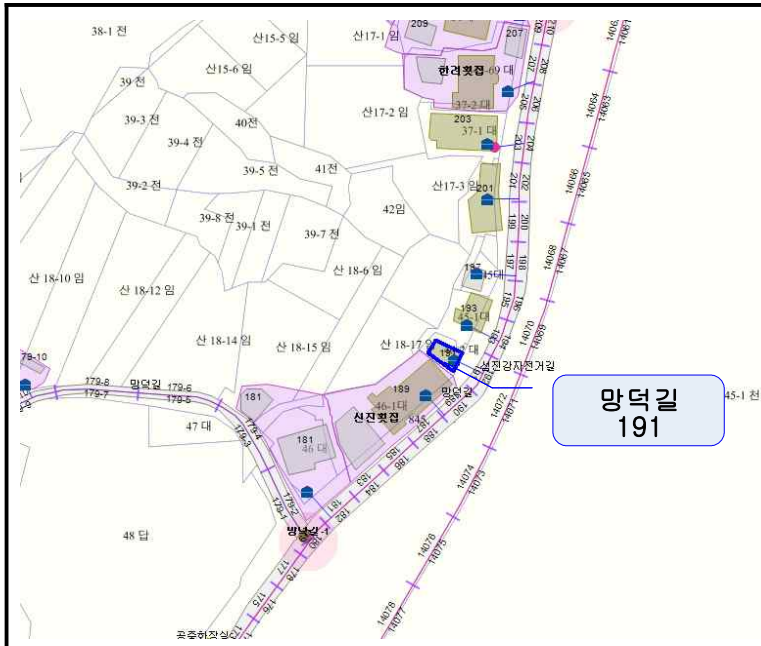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망덕길	191	진월면 망덕리 46-2	▶ 건물철거 (건축과-26270(2021. 7. 1.)호에 의거)	2021. 7. 1.	2021. 7. 14.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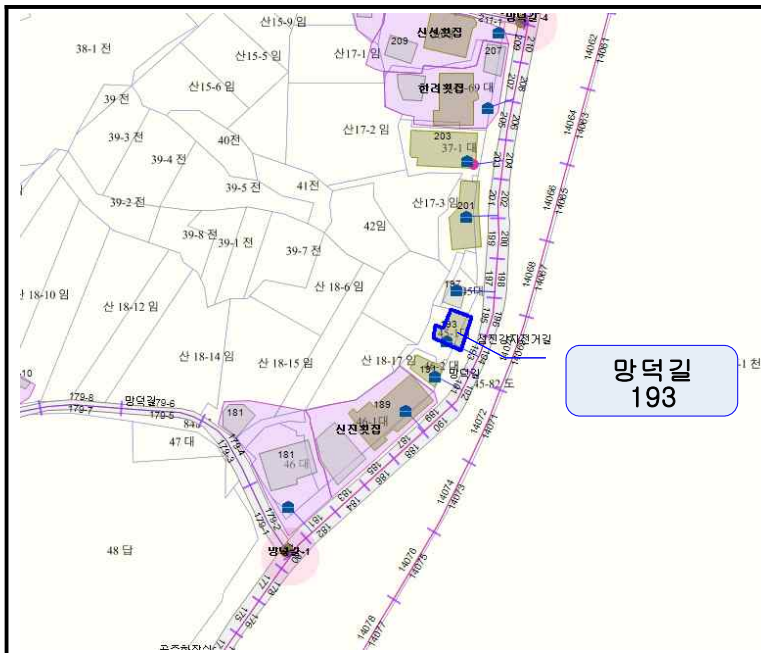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망덕길	193	진월면 망덕리 45-1	▶ 건물철거 (건축과-26270(2021. 7. 1.)호에 의거)	2021. 7. 1.	2021. 7. 14.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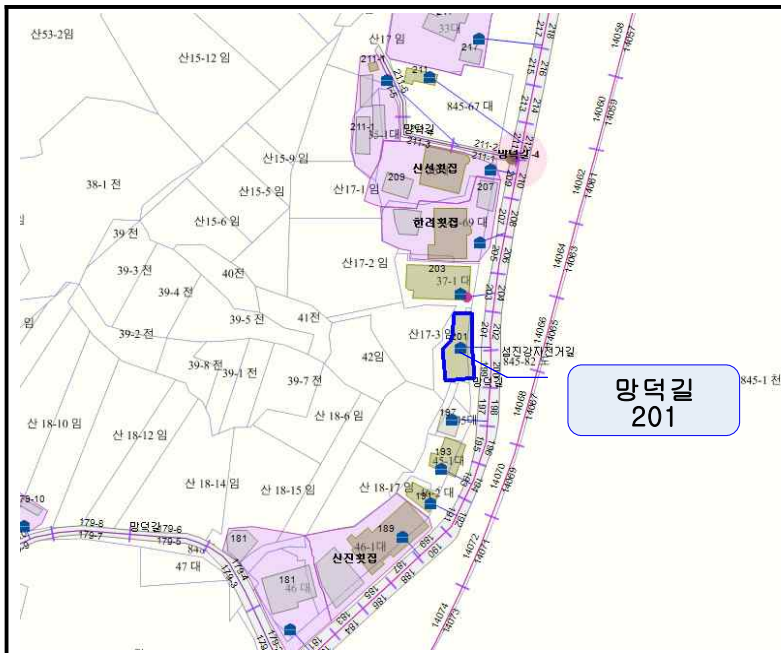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망덕길	201	진월면 망덕리 845-72	▶ 건물철거 (건축과-26270(2021. 7. 1.)호에 의거)	2021. 7. 1.	2021. 7. 14.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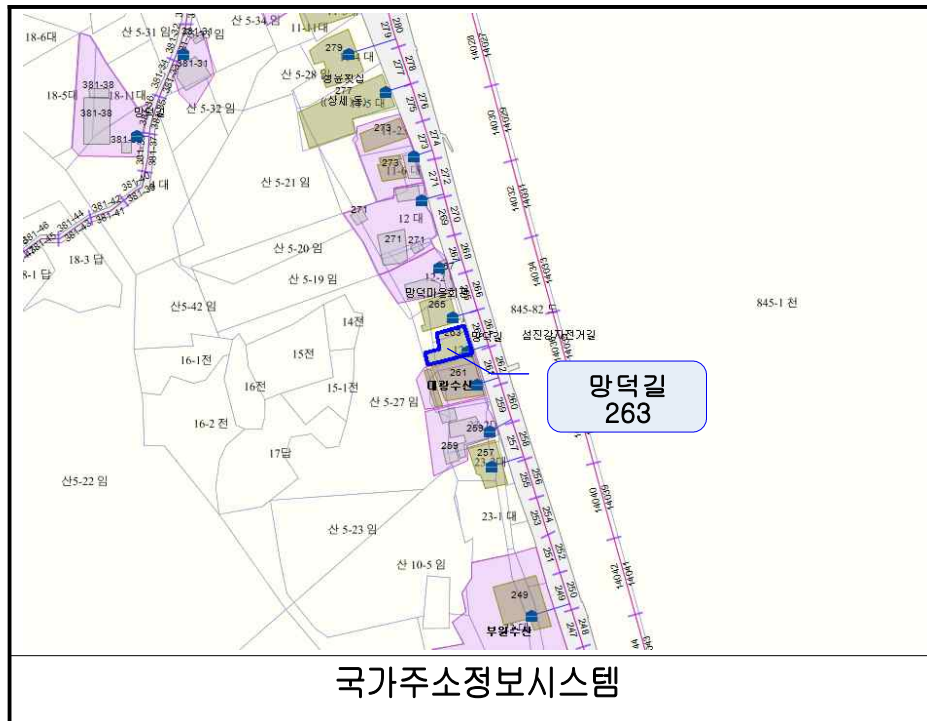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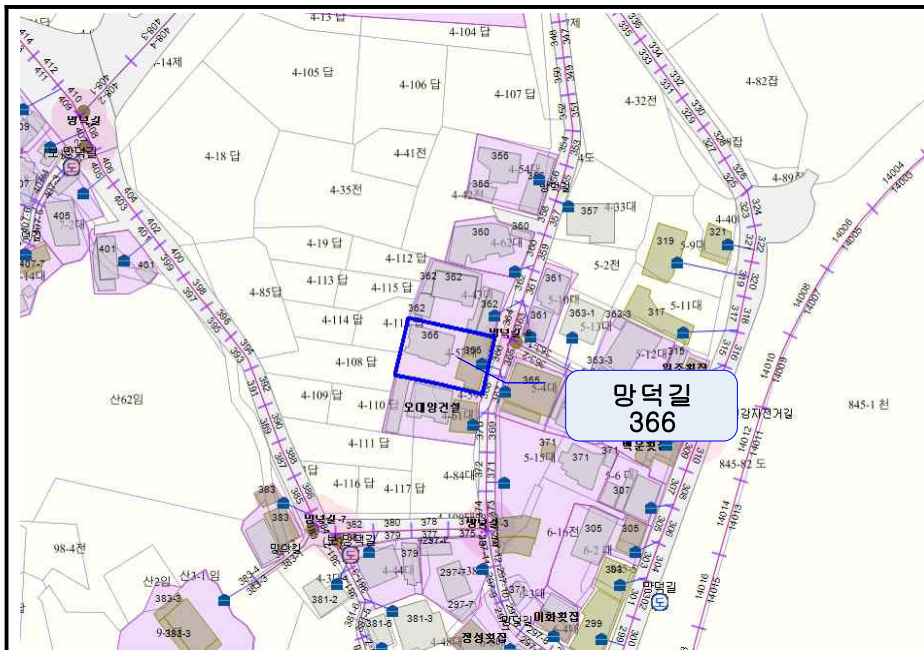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망덕길	263	진월면 망덕리 12-8	▶ 건물철거 (건축과-26270(2021. 7. 1.)호에 의거)	2021. 7. 1.	2021. 7. 14.

 현황도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망덕길	366	진월면 망덕리 4-57	▶ 건물철거 (건축과-26270(2021. 7. 1.)호에 의거)	2021. 7. 1.	2021. 7. 14.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광양시 공고 제 2021 - 1348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8.

광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7. 8. ~ 2021. 7. 22. (14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도로명 변경(붙임조서 참조)
4.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서식 작성 제출(시청 민원지적과 비치)
6. 도로명 변경 절차

도로명 변경신청 ▪ 주소사용자의 4/5이상 동의	신청 받은 날부터 ⇒ 30 일 이내	의견수렴공고 14일 이상	의견 수렴한 날부터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	------------------------------------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 신청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도로명주소팀 ☎ 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 상

□ 도로명 변경 조서(선바위길)

연번	구분	도 로 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 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변경사유	부여방식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 장 (m)	폭 (m)		시작	끝			
1	기존	선바위길 (1차종속도로)	길	옥곡면	옥곡면 대죽리 1387	옥곡면 대죽리 954-1	도면 참조	610	4	20	65-1	65-86	신청에 의한 변경	자연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변경	선바위1길 (주도로)	길								1	62			
2	기존	선바위길 (2차종속도로)	길		옥곡면 대죽리 1387	옥곡면 대죽리 1113-2		105	4	20	65-8	65-30			
	변경	선바위1길 (1차종속도로)	길								8-1	8-12			

※ 도로길이(m)는 약간의 변동의 있을 수 있음

□현황도면

